

공직선거법

문 1.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.
- ②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해당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.
- ③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선거가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의 통지를 받은 날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.
- ④ 천재·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는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을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.

문 2. 공무원 등의 입후보 시 그 사직기한이 다른 것은?

- ① 시·도지사가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
- ② 자치구·시·군의 장이 시·도지사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
- ③ 시·도의회의원이 자치구·시·군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
- ④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이 임기만료에 따른 시·도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

문 3.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선거일 오후 6시(보궐선거 등은 오후 8시)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는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.
- ②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.
- ③ 후보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으나 개표참관인은 될 수 있다.
- ④ 개표참관인은 당해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 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된 장소에 전화·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.

문 4. 공직후보자의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는 때에 등록대상재산, 병역사항, 최근 5년 간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첨부하지 않으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.
- ② 후보자가 제출한 등록대상재산, 병역사항, 최근 5년 간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는 당선인의 임기 중 선거구민에게 공개한다.
- ③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재산상황, 병역사항, 최근 5년 간 세금 납부 및 체납실적, 전과기록, 직업·학력·경력 등 인적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.
- ④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문 5. 지방자치단체의 설치·폐지·분할 또는 합병 시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설치·폐지·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·폐지·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날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만 변경된 경우라도 새로 선거를 실시하므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시의 잔임기간 동안 변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될 수 없다.
- ③ 2개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.
- ④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폐지된 때에는 그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한다.

문 6.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)가 직접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 공통적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
- ㄱ. 선거벽보
- ㄴ. 선거공보
- ㄷ. 거리게시용 현수막
- ㄹ. 신문광고
- ㅁ. 공개장소에서의 연설·대담
- ㅂ. 선거일전 60일부터 개최하는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·토론회
- ㅅ. 선거공약서
- ㅇ.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

- ① 2개
- ② 3개
- ③ 4개
- ④ 5개

문 7. 선거비용보전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.
- ② 선거사무장이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「공직선거법」상 후보자비방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전할 비용 중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하지 아니한다.
- ③ 예비후보자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그로 인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한다.
- ④ 후보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「공직선거법」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기소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전을 유예한다.

